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72 호 2016. 12. 30(금)

조 례

남해군조례 제2210호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211호	남해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남해군조례 제2212호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남해군조례 제2213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남해군조례 제2214호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0
남해군조례 제2215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조례 제2216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남해군조례 제2217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조례 제2218호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남해군조례 제2219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남해군조례 제2220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남해군조례 제2221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0
남해군조례 제2222호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22
남해군조례 제2223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남해군조례 제2224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남해군조례 제2225호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5
남해군조례 제2226호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39
남해군조례 제2227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남해군조례 제2228호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56
남해군조례 제2229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지원 조례	61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14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2
--------------	------------------------------	----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10호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를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리행정” 을 “리 행정” 으로 하고 “참여케” 를 “참여하게” 로 하며,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리 개발위원회”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리 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로 하고, 제1호 중 “리지역” 을 “리 지역” 으로 하며, 제2호 중 “이해조정” 을 “이 해 조정” 으로 하고, 제3호 중 “문화복지 후생” 을 “문화·복지·후생” 으로 하며,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제6호 중 “리방위 및 예비군” 을 “리 방위 및 예비군” 으로 하고, 제7호 중 “읍면장, 리장” 을 “읍·면장, 이장”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 을 “리 대장, 청년회장과 읍·면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장” 를 각각 “읍·면장”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을 “사무” 로 하고 “위원회의” 를 “위원회 회의” 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비집행 상황” 을 “사업비 집행상황”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하며” 를 “보고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군회계년도” 를 “군 회계연도”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하고 제2항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하며,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1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를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이장”을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과목별 평정결과 성취도 「우」 이상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재학 중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3조 중 “읍면장은 제2조 규정”을 “읍·면장은 제2조”로 하고, “장학금”을 “이장자녀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로 하며, “매학년”을 “매 학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 “매학기”를 “매 학년”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을 삭제함

제5조 중 “군당”을 “남해군”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공납금 전액”을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를 “분기별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2호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해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남해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문화관광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남해군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3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5일간” 을 “3일간” 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를 “민법 제750조에 따른다.” 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차료 환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임대기간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차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사용일수를 공제한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4호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비 및 기타” 를 “정비 및 그 밖의” 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기대당” 을 “기계 한 대당” 으로 하고, “20,000원” 각각 “3만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5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6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 법 제3조” 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 를 “법 제22조의2” 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12조제4항” 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25조제1항 중 “규칙” 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자문을” 을 “심의를” 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 을 “영 제84조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 을 “영 제84조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6항” 을 “영 제84조제7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 을 “영 제84조제8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4조제8항” 을 “영 제84조제9항” 으로 한다.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학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1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41조의5(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 중 “영 제84조제4항” 을 “영 제84조제5항” 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주민제안으로 입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안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7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남해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8호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제2조16호라목”을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하며,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19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을 “매각대금의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법 제27조제3항” 을 “법 제27조제5항” 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 을 “법 제27조제6항” 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을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채취물” 을 “원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제29조제3항 중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을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의 조 제목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을 “(대부료 등의 납기)” 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하단부분을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제38조제1항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0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1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그 밖에 지역주민”을 “지역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6. 그 밖에 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선도하여야 한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타지역”을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도우미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2호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평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3호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같은법” 을 “같은 법”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8호” 를 “제14호” 로 한다.

제11조의 “(명을 말노선한다)” 를 “(노선명을 말한다)” 로 한다.

제23조 중 “생활화촉진” 을 “사용 촉진”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한다” 를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9조의 “도로명주소담당주사로” 를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4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사람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를 “사람 중에서 ”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의 “새주소업무 담당주사로”를 “도로명주소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5호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순신 순국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순신 순국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공원의 관람을 위하여 공원 안으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이순신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캠핑장 이용료”란 노량해전 캠핑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호국광장 : 바다광장, 하늘바다휴게소, 노량해전 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 위령탑, 각서공원 등
2. 관음포광장 : 리더십체험관, 이순신 밥상체험관, 이순신 인물체험공원, 안내광장, 어울림광장 등
3. 통합시설 : 이순신 영상관(이하 “영상관” 이라 한다),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제5조(관리주체) ① 군수는 공원을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직접운영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공원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 한다.

② 공원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 날 휴장한다)
2. 공원 전체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가 필요한 기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제7조(입장료 및 매표시간) ① 공원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운영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④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6.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8. 주민등록이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시·군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관람 및 관람시간) ① 영상관의 관람료와 관람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상관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영상관 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8.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관람료를 적용한다.

제11조(수장품의 수집, 제작·유통 등) ① 군수는 영상관의 영상물 및 전시물 관련 자료 및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 제작·유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상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지정된 지역 외에서 취사 행위
6.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7. 공원 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흥기 등을 소지하는 행위
8.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4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캠핑장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6조(캠핑장 이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캠핑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캠핑장 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6조에서 규정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가.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나. 남해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8조(캠핑장 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이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에 따른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9조(캠핑장 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20조(캠핑장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21조(캠핑장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7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24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소
- 2. 기념품 판매점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제25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재산의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공원의 일부를 수탁하는 자의 사용료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3조를 적용한다.

제2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관리 주체 모집은 공고를 통해 실시하며,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남해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운영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④ 수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사전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2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 소 년·군 인	어 린 이
개 인	3,000	2,500	2,000
단 체	2,500	2,000	1,5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무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 2]

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제8조 관련)

회원 시·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

[별표 3]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및 관람시간(제9조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000	1,000	8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2. 관람시간

구 분	전시 관람시간	영상물 상영시간
성수기	09:00 ~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10시, 11시 • 오후 :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 야간 : 19시, 20시
비수기	09:0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 10시, 11시 • 오후 : 13시, 14시, 15시, 16시

1. 성수기 : 5월 1일 ~ 10월 31일
2. 비수기 : 11월 1일 ~ 다음연도 4월 30일

[별표 4]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 소 년·군 인	어 린 이
개 인	2,000	1,500	1,000
단 체	1,000	1,000	5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 5]

캠핑장 이용료 및 이용방법(제16조 관련)

1. 이용료

구 분	요 금	비 고
1박2일 기준 (1사이트)	35,000원	* 사이트 당 4인/차량 1대 - 1인 추가 시 이용료 추가 - 추가 차량은 공원 외 주차장 이용 * 유아(36개월 미만)는 무료

2. 이용방법

- 입장 시간 : 14시 이후 / 퇴장 시간 : 12시 이전
- 입장 제한 시간 : 20시30분까지(이후로는 입장 불가능)
- 자리 이동 불가(사이트 임의 이동 통제)
- 공원 폐장 시간 이후(밤 9시) 이순신 영상관 등 전시관람 행위 통제 및 공
원 외부 출입 불가
- 애완동물 동반 입장 금지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시 퇴장 조치
- 자연재해 발생 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

[별표 6]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19조 관련)

구분	내용	사 용 료 반 환 기 준		비 고		
캠 핑 장	성수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혹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주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혹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주말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주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비 수 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주 말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별표 7]

캠핑장 사용수칙 (제22조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o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o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o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o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o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o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 o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7. 동 물
 - o 시설내에서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o 캠핑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o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2226호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제6조의2제2항·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2.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3.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고 최고 층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동의 층수가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변경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내의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가 회의록을 공개요청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등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 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건축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개최 후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 비용(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 복구비를 예치한 때에는 그 금액은 예치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남은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닐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해수욕장의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한시적 영업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로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7.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금연이 의무화된 시설의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에 한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 수행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 건축신고
2. 법 제19조제2항의 용도변경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천막구조 등 존치기간 1년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 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동 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남해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소속 건축사

③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대행절차 등은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반기별 일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이때 사용승인은 최초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에는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4.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준공인가를 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내의 건축물
6.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7.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한다) 용도로서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2이상을 높이 1미터(경사도 1:2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이상 조경석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생나무울타리를 설치한 건축물
8.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설치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옥상조경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녹화비용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밖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너비는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
3. 공개공지에는 조명·조경·파고라·긴 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농가창고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15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인준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인 경우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3.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신고 수리한 사실상 도로인 경우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3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 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4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 건축물

제7장 건축협정

제4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역을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보칙

제4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액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액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회수 : 2회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착공한 경우
4.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지시 기간 중에 추가 시공을 한 경우

제46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시점이 10년 경과(항공사진 등 증빙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자진해서 등재 요청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영 [별표 1]제1호가목)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7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 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5.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은 사람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사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227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8호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 여건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으로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효율적,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및 교육지원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관련 사업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한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 5. 창업농어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각종 복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공익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29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남해군 해수면(이하 “해수면” 이하 한다)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또는 선박등(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및 남해군 선적인 선박 등의 소유자에 의하여 수난구조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하 “수난구조 참여자” 라 한다)으로 한다.

1. 남해군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난구조 활동에 직접 관련된 유류대와 인건비 등으로 하되, 군수가 현지 활동상황을 파악하여 경비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수난구조에 따른 실비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④ 수난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조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14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을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송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를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